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1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도 욱)

□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배출 종류가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품목과 규격을 세분화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
(안제19조제1항2호 별표1)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세분화하는 사유는 ?		○ 대형폐기물 수거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과 수수료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세분화하는 것임.	
○ 대형폐기물 수수료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		○ 세분화 작업(신설 72개 품목)하면서 일률적 부과를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켰음.	
○ 수수료가 높으면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		○ 무단투기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인상품목이 공기청정기 1개 품목이고 나머지는 인하되거나 종전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한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
의결 년월일	2007. 1.23

제안년월일 : 2007년 1월 18 일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회

1. 수정이유

- 대형 폐기물 배출 품목의 종류가 다형화 되면서 지금까지는 유사품목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출하였으나,
- 배출 품목을 세분화하고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써, 생산 품목의 종류에 따라 배출 수수료를 적용하나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과다 책정된 일부 배출 품목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서 “2층 침대셋트 20,000원을 18,000원”으로 인하하고, “카펫 210x210cm이상 12,000원을 10,000원”으로 인하함. (안 제19조제1항2호 별표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서 “2층 침대셋트 20,000원을 18,000원”으로 인하하고, “카펫 210x210cm 이상 12,000원을 10,000원”으로 인하함. (안 제19조제1항2호 별표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9조관련)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9조관련)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여행용가방	모든규격	2,000	가방	여행용,골프용 일반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가스렌지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앰프	모든규격	4,000	가정용앰프	-----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가정용에어컨설외기	모든규격	3,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가정용운동매트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개집	모든규격	4,000	개정안과 같음.		
거울	모든규격	2,000	----	120cm이상 120cm미만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2,000	-----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4,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금고	대형(70×100cm이상) 중형(60×100cm미만) 소형(50×60cm미만)	7,000 6,000 5,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나무류	100ℓ 용량 50ℓ 용량 20ℓ 용량	5,000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팬히터	모든규격	4,000	난로 (팬히터)	석유 가스 전기	4,000 4,000 2,000	개정안과 같음.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신설> ≥	8,000 6,000 4,000	-----	----- ----- ----- 업소용300ℓ 이상(대) 업소용300ℓ 미만(소)	----- ----- ----- 15,000 6,000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신설>			노래방기계	모니터 애플	4,000 4,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노트북 컴퓨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녹즙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다리미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당구대	돌제외	20,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도마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돗자리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드럼통	모든규격	5,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뿔틀	모든규격	4,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런닝머신	모든규격	6,000	개정안과 같음.		
문갑	문갑1쪽당	4,000	----	문갑1쪽당 (1m미만)	----	개정안과 같음.		
<신설>			물탱크	1톤당	10,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미끄럼틀	유아용	5,000	개정안과 같음.		
믹서기	모든규격	4,000	-----	-----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발지압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밥상	대 소	3,000 2,000	----	1m이상 1m미만	---- ----	개정안과 같음.		
<신설>			방석	1인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방충망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변기통	모든규격	3,000	-----	변기, 물통	----	개정안과 같음.		
<신설>			보온병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보일러, 유류통	높이 1.5m이상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7,000 5,000 3,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보행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복사기	모든규격	7,000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블라인드 (버티칼)	-----	-----	개정안과 같음.		
<신설>			비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빙수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건조대	모든규격	2,000	빨래건조대	-----	-----	개정안과 같음.		
<신설>			빨래판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대형선풍기	모든규격	3,000	선풍기	산업용 가정용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쇼파	대형6인용	8,000	-----	대형4인이상 (개당)	-----	개정안과 같음.		
	소형4인용	5,000		2~3인용 (개당)	-----			
	1인용	3,000		1인용 (개당)	-----			
수족관	대 소	7,000	-----	1m이상	-----	개정안과 같음.		
		3,000		1m미만	-----			
<신설>			스키셋트	모든규격	3,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스텝퍼	모든규격	4,000	개정안과 같음.		
스피커	모든규격	2,000	-----	60cm이상 (개당)	5,000	개정안과 같음.		
				60cm미만 (개당)	2,000			
벽시계	모든규격	3,000	시계(벽시계)	100cm이상 100cm미만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개정안과 같음.		
액자	모든규격	2,000	-----	120cm이상	3,000	개정안과 같음.		
				120cm미만	2,000			
에어콘	264㎡이상	8,000	에어컨 (온풍기)	-----	-----	개정안과 같음.		
	66㎡이상	5,000		-----	-----			
	66㎡미만	3,000		-----	-----			
오락기	29인치이상	10,000	-----	높이120cm 이상	-----	개정안과 같음.		
	29인치미만	5,000		높이60~120cm 미만	-----			
	20인치이하	4,000		높이60cm	-----			
				미만	-----			

현행			개정안			수정안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올겐	모든규격	4,000	오르간 (전자키보 드포함)	-----	----	개정안과 같음.		
<신설>			옥매트 (자석요)	2인용 1인용	5,000 3,000	개정안과 같음.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옷걸이 (행거포함)	-----	----	개정안과 같음.		
<신설>			욕실장식장 (욕실수납장)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우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운동용 자전거	모든규격	4,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유리판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유아용변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유아용욕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유아용카 시트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의자	장의자 (4,5인용) 보조의자 (2,3인용) 회전의자 일반의자	5,000 3,000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이불	대(동절기) 소(하절기)	4,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자동판매기	대형(복합기) 소형(전용기)	10,000 5,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장난감	그네, 목마, 자동차 등	2,000	개정안과 같음.		
장롱	120cm장1쪽 90cm장1쪽 <신설>	15,000 10,000	장롱	120cm이상1쪽 90cm~120cm 미만 1쪽 90cm미만 1쪽	----- ----- 7,000	개정안과 같음.		
차단스	90×180cm 이상 90×180cm 미만	10,000 6,000	장식장 (차단스)	---	-----	개정안과 같음.		
장식장(책장)	90×180cm 이상 90×180cm 미만 <신설>	7,000 5,000	책장(책꽂이)	----- ----- 책상용3단 이하	----- ----- 2,000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신설>			장판	5m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전기밥솥 (전기밥통)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전기장판	모든규격	3,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전자렌지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전화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정수기	모든규격	3,000	-----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진열장 (진열대)	200cm이상 100cm이상 100cm미만	10,000 7,000 5,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찬장	1m이상 1m미만	4,000 3,000	개정안과 같음.		
책꽂이 (책상용)	3단이상 2단이하	3,000 2,000	<삭제>			개정안과 같음.		
<신설>			청소기	업소용 가정용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칠판(게시판)	100cm이상 100cm미만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침대	1인용침대 1인용매트 리스 2인용침대 2인용매트 리스 <신설>	10,000 5,000 15,000 8,000	----- ----- ----- -----	1인용침대 셋트 ----- 2인용침대 셋트 ----- 1인침대틀 2인침대틀 2층침대셋트 신생아침 대셋트 3단매트 (쇼파겸용)	----- --- ----- --- ----- 5,000 7,000 20,000 5,000 ----- 5,000	----- ----- ----- ----- ----- ----- ----- ----- ----- ----- 2층침대셋트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 ----- ----- ----- ----- ----- ----- ----- ----- 18,000	
<신설>			카세트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카펫	210×210cm 이상 210×210cm 미만 180×180cm 이하	12,000 8,000 5,000		----- --- ----- --- ----- ---	----- --- ----- ---		210×210cm 이상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10,000

현행			개정안			수정안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신설>			칸막이 (파티션포함)	경량칸막이 120cm이상 120cm미만	4,000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칼라박스 (수납장)	3단이상 3단미만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커피메이트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컴퓨터책상	120cm이상 120cm미만	4,000 3,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콘솔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타자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탁구대	1대	14,000	개정안과 같음.		
탁자	모든규격	3,000	----	회의용 응접실용	6,000 3,000	개정안과 같음.		
텔레비전	42인치이상 12인치이상 <신설>	5,000 3,000	-----	32인치이상 19~32인치 미만 19인치미만	5,000 4,000 3,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토스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파라솔	모든규격	3,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파레트	지게차용	4,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판넬	공사용	4,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팩시밀리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평상	1.5m×1.5m 이상 1.5m×1.5m 미만	7,000 5,000	개정안과 같음.		
항아리	모든규격	4,000	-----	50cm이상 50cm미만	4,000 3,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화분	50cm이상 50cm미만	3,000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환풍기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신설>			CD꽃이	모든규격	2,000	개정안과 같음.		
오디오·TV다이	모든규격	2,000	TV받침대	-----	----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비디오	모든규격	4,000	VTR	-----	2,000	개정안과 같음.		
<p>※ 상기 이외의 열거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 및 깨진유리 등과 같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일반용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적용</p>			<p>※ 상기 이외의 열거되지 않은 대형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일반용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적용</p>			<p>※ 개정안과 같음.</p>		

[수정안포함]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청소과
입 안 자	담당과장	도 욱
	담당팀장	이수민
	담 당 자	김혜경(320-3161)

[별표 1]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9조관련)

연 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 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1	가방	여행용,골프용 일반	3,000 2,000	17	노래방기계	모니터 앰프	4,000 4,000
2	가스렌지	모든규격	2,000	18	노트북 컴퓨터	모든규격	2,000
3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4,000 2,000	19	녹즙기	모든규격	2,000
4	가습기	모든규격	2,000	2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5	가정용앰프	모든규격	2,000	21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6	가정용에어컨 실외기	모든규격	3,000	22	당구대	돌제외	20,000
7	가정용 운동매트	모든규격	2,000	23	도마	모든규격	2,000
8	간판	60×180cm이상 60×180cm미만 입간판	7,000 4,000 2,000	24	돗자리	모든규격	2,000
9	개집	모든규격	4,000	25	드럼통	모든규격	5,000
10	거울	120cm이상 120cm미만	3,000 2,000	26	뽀틀	모든규격	4,000
11	고무통	90×100cm이상 90×100cm미만 70×80cm이하	4,000 3,000 2,000	27	런닝머신	모든규격	6,000
12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4,000 2,000	28	문갑	문갑1쪽당 (1m미만)	4,000
13	금고	대형(70×100cm이상) 중형(60×100cm미만) 소형(50×60cm미만)	7,000 6,000 5,000	29	문짝	방문,현관문 창문	3,000 2,000
14	나무류	100ℓ 용량 50ℓ 용량 20ℓ 용량	5,000 3,000 2,000	30	물탱크	1톤당	10,000
15	난로 (팬히터)	석유 가스 전기	4,000 4,000 2,000	31	미끄럼틀	유아용	5,000
16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업소용300ℓ 이상(대) 업소용300ℓ 미만(소)	8,000 6,000 4,000 15,000 6,000	32	믹서기	모든규격	2,000

연 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 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33	발지압기	모든규격	2,000	52	세면대	모든규격	3,000
34	밥상	1m이상 1m미만	3,000 2,000	53	세탁기	모든규격	4,000
35	방석	1인용	2,000	54	쇼파	대형4인이상(개당) 2~3인용(개당) 1인용(개당)	8,000 5,000 3,000
36	방충망	모든규격	2,000	55	수족관	1m이상 1m미만	7,000 3,000
37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56	스키셋트	모든규격	3,000
38	변기통	변기 물통	3,000 3,000	57	스텝퍼	모든규격	4,000
39	변압기	모든규격	2,000	58	스피커	60cm이상(개당) 60cm미만(개당)	5,000 2,000
40	병풍	모든규격	3,000	59	시계(벽시계)	100cm이상 100cm미만	3,000 2,000
41	보온병	모든규격	2,000	60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2,000
42	보일러, 유류통	높이 1.5m이상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7,000 5,000 3,000	61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43	보행기	모든규격	2,000	62	식탁	6인용이상 6인용미만	5,000 4,000
44	복사기	모든규격	7,000	63	신발장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5,000 4,000
45	블라인드 (버티칼)	모든규격	3,000	64	쌀통	다용도 일반	3,000 2,000
46	비테	모든규격	2,000	65	씽크대	개수대,찬장(개당) 가스렌지대(개당)	3,000 2,000
47	빙수기	모든규격	2,000	66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48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67	액자	120cm이상 120cm미만	3,000 2,000
49	빨래관	모든규격	2,000	68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66㎡이상 66㎡미만	8,000 5,000 3,000
50	서랍장	5단이상 4단이하	6,000 4,000	69	오디오	대형이상 중·소형	5,000 3,000
51	선풍기	산업용 가정용	3,000 2,000	70	오디오케이스	모든규격	4,000

연 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 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71	오락기	높이120cm이상 높이60~120cm미만 높이60cm미만	10,000 5,000 4,000	89	장롱	120cm이상 1쪽 90cm~120cm미만 1쪽 90cm미만 1쪽	15,000 10,000 7,000
72	오르간(전자 키보드포함)	모든규격	4,000	90	장식장(차단스)	90×180cm이상 90×180cm미만	10,000 6,000
73	옥매트 (자석요)	2인용 1인용	5,000 3,000	91	장판	5m	2,000
74	옷걸이 (행거포함)	모든규격	2,000	92	재봉틀	모든규격	4,000
75	육실장식장 (육실수납장)	모든규격	2,000	93	전기밥솥 (전기밥통)	모든규격	2,000
76	욕조	모든규격	4,000	94	전기장판	모든규격	3,000
77	우산	모든규격	2,000	95	전자렌지	모든규격	2,000
78	운동용 자전거	모든규격	4,000	96	전화기	모든규격	2,000
79	유리판	모든규격	2,000	97	정수기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3,000 2,000
8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98	조명기구	모든규격	2,000
81	유아용변기	모든규격	2,000	99	진열장 (진열대)	200cm이상 100cm이상 100cm미만	10,000 7,000 5,000
82	유아용욕조	모든규격	2,000	100	찬장	1m이상 1m미만	4,000 3,000
83	유아용 카시트	모든규격	2,000	101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84	의자	장의자(4,5인용) 보조의자(2,3인용) 회전의자 일반의자	5,000 3,000 3,000 2,000	102	책장(책꽂이)	90×180cm이상 90×180cm미만 책상용3단이하	7,000 5,000 2,000
85	이불	대(동절기) 소(하절기)	4,000 2,000				
86	자동판매기	대형(복합기) 소형(전용기)	10,000 5,000	103	청소기	업소용 가정용	3,000 2,000
87	자전거	성인용 어린이용	3,000 2,000	104	칠판(계시판)	100cm이상 100cm미만	3,000 2,000
88	장난감	그네,목마,자동차 등	2,000				

연 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연 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105	침대	1인용침대셋트	10,000	119	텔레비전	32인치이상	5,000
		1인용매트리스	5,000			19~32인치미만	4,000
		2인용침대셋트	15,000			19인치미만	3,000
		2인용매트리스	8,000	120	토스터	모든규격	2,000
		1인침대틀	5,000	121	파라솔	모든규격	3,000
		2인침대틀	7,000				
		2층침대셋트	20,000				
		신생아침대셋트	5,000				
		3단매트(쇼파겸용)	5,000				
106	카세트	모든규격	2,000	122	파레트	지게차용	4,000
107	카펫	210×210cm이상	12,000	123	판넬	공사용	4,000
		210×210cm미만	8,000				
		180×180cm이하	5,000				
108	칸막이 (파티션포함)	경량칸막이	4,000	124	팩시밀리	모든규격	2,000
		120cm이상	3,000				
		120cm미만	2,000				
109	칼라박스 (수납장)	3단이상	3,000	125	평상	1.5m×1.5m이상	7,000
		3단미만	2,000			1.5m×1.5m미만	5,000
110	캐비닛	철재	4,000	126	피아노	그랜드 어프라이트	15,000
		화일캐비닛4단이상	3,000				10,000
		화일캐비닛3단이하	2,000				
111	커피메이트	모든규격	2,000	127	항아리	50cm이상	4,000
						50cm미만	3,000
112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본체, 자판	각 2,000	128	화장대	폭 120cm이상	8,000
						폭 120cm미만	5,000
113	컴퓨터책상	120cm이상	4,000	129	화분	50cm이상	3,000
		120cm미만	3,000			50cm미만	2,000
114	콘솔	모든규격	2,000	130	환풍기	모든규격	2,000
115	타자기	모든규격	2,000	131	휠체어	모든규격	2,000
116	탁구대	1대	14,000	132	CD꽂이	모든규격	2,000
117	탁자	회의용 응접실용	6,000 3,000	133	TV받침대	모든규격	2,000
118	탈수기	모든규격	2,000	134	VTR	모든규격	2,000

※ 상기이외의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일반용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적용